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률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명칭을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안 제명)
- 나.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 근거 마련 및 전자게시대 설치 규제 완화(안 제7조)
- 다.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조항 보완(안 제14조)
- 라. 허가·신고 수수료 항목(현수기, 전자게시대)일부 신설(안 제26조, 별표 3)
- 마.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 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이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조에 따른 구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3. 그 밖에 시장이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

경)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현수막·벽보·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

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이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의 시설물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가. 높이 및 면적

-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 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 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

- 1)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
- 2) 자동차전용도로: 200미터 이상
- 3)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

2. 선전탑의 경우

가. 높이: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나. 표시시간: 90일 이하

3.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할 것

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9조제3

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출하지 않을 것
 -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

떨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20조에 따라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이하 “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게시시설의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1조에 의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 및 단체·법인으로 종업원 3명 이상

2.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카메라 및 그 밖에 위탁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현수막의 신고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탈부착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정게시대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관리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10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같은 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3. 해당 지역의 구미시의회 의원

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 업무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시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주민협의회 업무)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회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

업기간, 사업비, 예산 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
(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상북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밖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④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옥외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옥외광고사업자를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의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과 바람직한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하여 광고업자가 옥외광고물 공모전 또는 전시회에 출품하거나 관련 행사 등에 참여할 경우 디자인·제작·설치 및 행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원(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수거할 수 있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단속원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광고물등의 외국어 함께 쓰기)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함께 쓰기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구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 옥외광고업무담당 부서장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여성 등의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여성 등의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2.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준용한다.

⑧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 및 도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

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21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 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 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

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일시, 보관 장소 및 담당자
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방법등에 관하여는 영 제43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 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 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 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5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수수료: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미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

전점점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3.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구미시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구미시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미시 옥외광고심의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구미시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산정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 3”을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3”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3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30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0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2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40만원 - 16㎡ 이상 18㎡ 미만 160만원 - 18㎡ 이상 20㎡ 미만 180만원 4) 면적 20㎡ 이상 200만원+면적 2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최대 50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30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9만원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2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최대 500만원 이하
다.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4) 연면적 1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최대 500만원 이하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 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30만원 - 2㎡ 이상 3㎡ 미만 35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8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50만원 - 16㎡ 이상 18㎡ 미만 170만원 - 18㎡ 이상 2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210만원 - 25㎡ 이상 30㎡ 미만 230만원 - 30㎡ 이상 35㎡ 미만 245만원 - 35㎡ 이상 40㎡ 미만 260만원 - 40㎡ 이상 45㎡ 미만 280만원 - 45㎡ 이상 50㎡ 미만 290만원 5) 연면적 50㎡ 이상	300만원+연면적 50㎡ 초과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최대 500만원 이하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미만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 - 연면적 20㎡ 이상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5만원+연면적 2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 최대 100만원 이하 50만원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 미만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 - 연면적 20㎡ 이상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4) 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 최대 100만원 이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150만원 16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최대 500만원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연면적 5㎡ 초과 면적의 1㎡당 4만원을 더한 금액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비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 방법은 영 별표 5 비고를 따른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제24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1. 신규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2.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례 제·개정 시
3.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제1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4. 그 밖의 교육	따로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제26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비 고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6㎡ 이하	3,000원	
- 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타사광고		
- 면적 6㎡ 이하	30,000원	
- 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15,000원	
- 연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4,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35,000원	
-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15,000원	
-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15,000원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광고물등	수수료	비 고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9,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자동차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4,000원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 이하	3,000원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7,000원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3) 지정게시대예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3,000원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4) 현수기(1장)	3,000원	
파. 벽보(1건당)	5,000원	
하. 전단(500매마다)	5,000원	
거. 전자게시대(1건)	3,000원	
너. 입간판(1개)	4,000원	

광고물등	수수료	비 고
더. 네온류·전광류 광고물, 디지털광고물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 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 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1.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2.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3.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4.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5.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6. 공연간판		
가. 벽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7.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8.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별표 5]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수수료(제26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1.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2.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1.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비고
1.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경우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 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2) 도로 외의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개당 13만원 개당 22만원 개당 32만원 개당 42만원 개당 50만원 개당 64만원 개당 75만원 개당 100만원 개당 129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개당 8만원 개당 12만원 개당 14만원 개당 25만원 개당 33만원 개당 49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비고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 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개당 58만원 개당 67만원 개당 79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장당 8만원 장당 12만원 장당 14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장당 22만원 장당 25만원 장당 32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장당 42만원 장당 58만원 장당 75만원	
라) 면적 10㎡ -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장당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만7천원 장당 2만5천원 장당 4만2천원	
라. 전단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만7천원 장당 2만5천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비고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부과금액의 계산 방법은 영 별표 8 비고를 따른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 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⑮ 변 경 사 항	⑯ 비 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에어리어(구)상업지역면적(㎡)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⑯ 주 소	⑰ 전 화 번 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



-
- | | |
|----|--------------------------------------|
| 비고 | 1. 표시규격 |
| | ○ 현수막 : 가로 15cm × 세로 15cm |
| | ○ 현수기 및 벽보 전단 : 가로 5cm × 세로 5cm |
| | 2. 표시내용 : 표시기간 |
| |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단속원증

규격	가로5.5cm x 세로8.5cm	글자	검정색	사진	첨부
----	-------------------	----	-----	----	----

< 앞 쪽 >

20 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단 속 원 증 사 진 (3.5×4.5)  구 미 시

< 뒤 쪽 >

소 속(읍면동)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 (20 ~ 20)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에 따른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여부	
사용자재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밀도·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무게,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에 예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그 밖의 사항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청 번호	② 신청 일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등 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⑬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결과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여부	
사용자재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밀도·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무게,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에 예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그 밖의 사항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 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구비서류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서

제 호		
위탁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장

직인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	-----	-----	----	-----

< 앞 쪽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구 미 시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자격기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 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직인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일련 번호	광고물 종류	표시 내용	수량	보관 연월일	보관 장소	위반장소 ·위치	담당 (취급)자	비고

옥외광고물등 반환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	----

광고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및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물등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	----

광고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및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 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

[illegible]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 지정 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제50조 및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없 음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 지정서

제 호		
위탁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장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사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 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등에게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자율관리 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併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등(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도 조례 또

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開議) 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4. 허가·신고 등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5.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의 수리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6. 현수막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과 현수막에는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 등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다.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2.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 면적의 합계는 그 벽면 면적(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이내여야 하며, 가로 및 세로 크기는 그 벽면의 폭(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2분의1 이내여야 한다.

3.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의 윗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게시시설 또는 현수막이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군수가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가로크기는 10미터 이내,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색깔은 무채색·저명도·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3.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5.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6.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현수막 게시신청이 지정게시대에 게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관 실·과		도시재생과
입 안 자	과 장	황 진 득
	담 당	김 율 자
	담 당 자	정 이 정 (480-5622)